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 4. 29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5. 4. 22
- 다. 회부일자 : 95. 4. 22
- 라. 상정일자 : 95. 4. 28

2.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민경철)

가. 제안사유

도시계획법에 의한 대도시 공업지역내의 공장 신·증설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율을 인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안 제14조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백창기)

- 도시계획법에 의한 대도시 공업지역내의 공장 신·증설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에서 내무부 세제 1400-105(95. 3. 17)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업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임.
-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근거에 의거 세정 13400-329(95. 3. 22)호로 조례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공업지역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간 중과토록 되어 있는 것을 세율

10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공장유치와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수정안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본 1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14
----------	-------

제출년월일 : 1995. 4.

제출자 : 달서구청장(세무과)

1. 제안이유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내에 공장 신·증설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

2.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3. 주요골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안 제14조2 신설)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다음에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생략) <신설>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